

의안번호	2217059
의 퇴 인	김병주 의원
회 답 일	2026. 5. 4.
추계번호	26F103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-군유�휴지 창업 및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0조의2(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)	○ 기업이 군유희지 및 군유희지구주변지역으로 창업 및 이전하는 등의 경우, 기업이 취득·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현행 기회발전특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신설 － 감면대상: 기회발전특구에 창업, 이전 또는 공장을 신설·증설하는 기업이 취득·보유하는 부동산 → 군유희지 등에 창업, 이전 등 기업을 추가 － 적용기한: 2026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0조의2(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「군유희지 및 군유희지구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(이하 ‘군유희지 지원법안’)¹⁾에 따라 지정된 군유희지 등에 창업기업 등의 취득·보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과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,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80조의2)

1) 의안번호 2217058, 2026.2.26. 발의

- 현행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이전 또는 공장을 신설·증설하는 기업은 취득·보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
 - 감면대상: 기회발전특구에 창업, 이전 또는 공장을 신설·증설하는 기업이 취득·보유한 사업용 부동산
 - 감면내용: (창업) 취득세 50%, 재산세 5년 85% + 2년 50%
 - ※ 단, 수도권내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재산세 3년 85% + 2년 50% (본사 등 이전) 취득세 50%, 재산세 5년 85%
 - (공장 신설 및 증설) 취득세 50%, 재산세 5년 75%
 - ※ 단, 수도권내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재산세 5년 35%
 - 적용기한: 2026.12.31.
 - 개정안은 「군유휴지 지원법안」에 규정된 군유휴지 등에 창업, 이전 및 공장을 신설·증설하는 기업이 취득·보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기회발전특구와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에 따라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감면대상: 기회발전특구에 창업, 이전 또는 공장을 신설·증설하는 기업이 취득·보유한 사업용 부동산 → 군유휴지 등에 창업, 이전 또는 공장을 신설·증설하는 기업이 취득·보유한 사업용 부동산 추가
 - ※ 군유휴지 등: ①군유휴지와 ②군유휴지 주변지역을 의미
 - ① 군유휴지: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아니할 부지
 - ② 군유휴지 주변지역: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·면·동 및 인접한 읍·면·동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군유휴지 등에 창업, 이전 및 공장의 신설 및 증설하려는 기업이 취득 또는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공시가격 등을 추정해야 하나, 현 시점에서 관련 정보 및 근거규정의 부재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- 2026년 2월말 기준 전국의 군유휴지 등은 2,516필지 787.2만㎡ 수준
 - 참고로, 시도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
[표 3] 군유희지 등의 광역시·도별 현황: 2026.2. 기준

(단위: 필지, 만㎡)

지역구분	필지	면적	지역구분	필지	면적
서울특별시	56	21.9	충청북도	103	55.9
부산광역시	2	0.7	충청남도	113	13.1
대구광역시	13	2.6	전라남도	50	30.8
인천광역시	63	5.9	경상북도	71	42.4
광주광역시	5	0.6	경상남도	35	8.1
대전광역시	23	3.2	강원특별자치도	562	176.5
울산광역시	6	0.3	전북특별자치도	27	5.3
세종특별자치시	12	0.6	제주특별자치도	3	1.3
경기도	1,372	418.0	합 계	2,516	787.2

자료: 국방부 제출자료

- 또한,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해 신규 군유희지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음
 - － 부대개편사업에 따라 2027~2029년까지 강원도 철원군(자등리), 경기도 양주시(덕정동) 및 포천시(관인면) 등에 신규 군유희지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현재 국방부 등에 따르면, 군유희지 등에 대한 기업유치 등 활용계획이 부재하여 해당 부지에 창업이나 이전 등이 예상되는 기업을 특정할 수 없으며, 이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가액이나 공시가격 등을 추정할 수 없음
 - － 국방부에 따르면, 군유희지 등에 대한 기업유치 등 활용계획이 부재하여 해당 부지에 창업, 이전 및 공장의 신설·증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특정할 수 없음
 - －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이 향후 군유희지 등에서 취득 또는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용 부동산의 수요, 취득가액, 공시가격 등을 예상할 수 없음
 - － 또한, 구체적인 군유희지 주변지역의 범위 등에 대한 정보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